

2014. 4. 24(목) 11:00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제안자 (제안설명)	비고
1640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	
1641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교통과장)	
1642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교통과장)	
1643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친환경농산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5	4.15	4.23	4.23	강명권의원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5	4.15	4.23	4.23	교통과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5	4.15	4.23	4.23	교통과장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4.15	4.15	4.23	4.23	친환경농산과장

2. 제안 설명 요지 및 주요내용

①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2012년10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행업자 지정(허가)요건에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행정신뢰를 보호하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제도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긴급수선·긴급복구 등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행업자 요건 보완·확대(안 제10조제1항제2호)

[2]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개선(안 제9조)

- 연중무휴, 일 24시간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할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조정할 수 있다.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추가(안 제10조)

-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및 교현천, 충의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 나. 교현천, 충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 다. 제3조제1항의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

④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안 제3조)
- 나. 지원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까지(안 제4조2항)
- 다.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안 제5조)
- 라. 지원신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매년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안제6조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 하도록 하여 2012년도 10월 조례개정 이전 해당 자격취득자에

대한 행정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긴급수선 및 긴급복구 등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 됨.

②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및 휴무 등의 운영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국가유공 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안 제9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 여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일 24시간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 보유 현황과 운행 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야간운영시간과 공휴일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여지며

둘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국가유공상이자 추가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공상이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 됨. 다만, 장애인의 경우 1급~2급의 중증장애만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임을

감안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국가유공상이자 또한 적절한 이용가능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판단 됨.

③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운영일을 당초 일요일에서 법정공휴일로 확대하고, 주차장 수입이 저조한 전통시장 인근의 교현·충의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 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무료개방 운영일을 법정공휴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 근로자 복리증진 및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둘째 교현·충의 주차장의 무료개방 문제는 지난 2010년 10월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었으나 2012년 2월 장기주차 차량에 따른 문제로 다시 유료화 한바 있음을 볼 때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 됨.

④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본 조례 제정안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액국비 지원사업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외에 쌀값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명품 쌀 생산 및 쌀 산업 지속·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질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자격을 시장이 시행한 시공 기술자 자격시험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인지?

답변: 대행업 등록 자격 요건에 시장이 시행한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임.

②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질의: 국가상이유공자 중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

답변: 상이등급 1급과 2급정도로 하면 제한하는 것이 필요 할 듯함.

- (2) 질의: 특별교통수단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 이용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규칙 등을 마련하여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보는데?

답변: 세부 이용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이용대상자에게 운영사항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음.

[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무료개방시 장기 주차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답변: 주차단속원을 통해 3~4일이상 장기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등 단속 방안을 강구하겠음

[4]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 질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한도를 15만제곱미터로 한정한 이유는?

답변: 관내 벼 재배농가 중 1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가 없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6. 불 입

-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장애”를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상이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②(생략) <u>③ 연중무휴, 일 24시간 제로 운행하며, 장기 이용도 할 수 있다.</u> ④·⑤(생략)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u>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은 조정할 수 있다.</u> ④·⑤(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⑤(개정안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상이자 중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 <u>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 -----</u> 6. (개정안과 같음)